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관 소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인체적용제품의 통합위해성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연구관 1명)을 2025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의약품안전국의 1개 정책관 등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농촌진흥청 소속 1명(6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3명 중 13명(연구관 5명, 연구사 8명)은 감축하며, 10명(4급 1명, 연구관 3명, 연구사 6명)은 2023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의약외품 분야 연구개발 업무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3. ~ 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1명(6급 1명)은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2023년 2월 28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7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43”을 “644”로 하고, 일반직 계 “642”를 “6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23”을 “624”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339”를 “1,340”으로 하고, 일반직 계 “1,339”를 “1,340”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1,326”을 “1,327”로 한다.

별표4제1호1)를 삭제한다.

별표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6조의2제4항 관련)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10
일반직 계	10
4급 이하	10

[별표 5]

신·구조문대비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7조 관련)

1. 제37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4월 30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2. 제37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5년 3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5급 이하	1

현행	개정안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제33조(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u>해양수산</u> 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 ----- ----- <u>해양수산</u> 부, 1명(6급 1명)은 <u>농촌진흥청</u> -----.
제36조의2(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 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u>2023년 2월 28일까지</u>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종감염병백신검정과를 둔다.	제36조의2(신종감염병 백신검정과) ① ----- ----- ----- <u>2023년 12월 31일</u>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7조(한시정원) ① (생략)	제37조(한시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u>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농약</u> 등록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추	② <u>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u> 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30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6급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의약외품 분야 연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둔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연구관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③ <삭제>

신·구정원대비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643</u>	· <u>644</u>	+1
일반직 계	· · <u>642</u>	· · <u>643</u>	+1
3급 또는 4급 이하	· <u>623</u>	· <u>624</u>	+1
·	·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39</u>	<u>1,340</u>	+1
일반직 계	<u>1,339</u>	<u>1,340</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326</u>	<u>1,327</u>	+1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4